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우주항공청과그소속기관직제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직무(제3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우주위험예의 대비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도록 함.

나. 우주항공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우주항공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둬.

다.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둠.

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우주항공청에 24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230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두고,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에 52명(4급 이하 52명)의 정원을 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예비비 반영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우주항공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둔다.

제2장 우주항공청

제3조(직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우주항공청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도계획의 수립,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혁신, 행정제도 개선, 민원사무의 처리 등 행정관리 업무 관련 사항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

9. 청 소관사무와 관련된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추진
11. 우주항공 관련 국제규범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5.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운영
17.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8.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복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접수·발송 등 문서관리
4.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10.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보수, 파견·겸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2.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3.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4.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운영·지원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분석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7.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추진
8.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관리

9.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활용 정책의 수립·추진
 1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13. 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4.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우주인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및 전시
 17.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8. 우주환경 보호·감시체계의 구축·운영
 19.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 대응
 20.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및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2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
 22.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3.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
 24.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우주항공 기술 확보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2. 우주항공산업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의 발굴·시행
4. 우주항공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진흥계획 수립·추진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
6. 우주항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우주항공 혁신기술의 보급·확산
7. 우주항공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기술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 추진·지원
9.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10. 위성정보의 관리 및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운영
11.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운영
12.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기관 육성
14.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1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지원

16. 우주항공 기반 시설 및 장비의 중장기 구축 계획 수립·이행
17. 우주항공 기술·소재·부품·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시험 및 적합성평가 지원
18. 국내외 산학연의 시험·적합성평가 분야 연구협력 및 교류
19. 우주항공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추진
20. 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 산업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부문장 4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부문장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3.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마련
4.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5.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활동 총괄
6.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7. 청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확산, 사업화 지원 및 기술료 징수·배분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분야 임무센터(우주센터를 포함한다)의 지정·개발·운영 및 안전관리
9. 우주항공 분야 기술의 개발·확보·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협의
10. 우주발사체 등 우주수송시스템 개발 계획의 수립·추진
11. 우주수송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및 지원
12.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기준 마련 및 허가 심사 지원
13.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개량 계획 수립·추진
14. 우주발사체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운영
15. 우주수송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평가단 운영
16. 우주수송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시행
17. 우주수송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운영
18. 재사용발사체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19. 재사용발사체 시제품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0. 인공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1. 인공위성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및 지원
22.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평가단 운영
23. 인공위성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시행

24. 인공위성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운영
25.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
26.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서비스 인증체계의 수립·시행
27. 우주과학탐사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28.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29.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기술 개발·지원
30. 우주과학탐사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및 지원
31. 우주과학탐사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평가단 운영
32. 우주탐사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시행
33. 우주탐사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운영
34. 달착륙선 개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35. 달착륙선 본체·탑재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6. 미래 유·무인 항공기, 친환경 항공기 및 항공기 주요 부품·소재 등 개발 계획의 수립·추진
37. 항공혁신 분야(법 제2조제3호의 우주항공산업 및 같은 조 제4호의 우주항공기술 혁신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및 지원

38. 항공혁신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평가단 운영

39. 항공혁신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시행

40. 항공혁신 분야의 기술감리, 제조·공정 등의 품질 기준 개발 및 시험·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운영

41.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관련 기초·원천기술 및 항공기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추진 및 관리

42. 그 밖에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확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부문장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3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

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6조(직무)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위성의 관제·운영 및 안테나·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3. 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시행
4.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및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5. 위성정보의 검정·보정 및 제공
6. 범부처 위성정보 관리·활용 체제의 구성·운영
7. 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8. 그 밖에 국가위성의 운영·활용에 관한 사항

제17조(센터장)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동으로 소관 사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우주환경센터

제19조(직무)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조정
2.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협력 및 국제표준화
5. 우주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6.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처리·보존 및 국내외 분배·교환
7. 우주환경 분야 홍보
8. 그 밖에 우주환경의 연구 및 관측·예보에 관한 사항

제20조(센터장) ① 우주환경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

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는 7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5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우주개발 진흥 정책 기능과 우주전파의 탐지·분석 및 예보·경보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5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6명, 6급 1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사 6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체받는다.

② 항공우주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우주항공청

③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

업부차관,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④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경찰청”을 “우주항공청, 경찰청”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⑥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특별법」”으로 한다.

⑧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의9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6조제5항, 제19조의9제3항, 제19조의11제5항·제6항,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⑨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호, 제70조제2호의2 및 제1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 사고 2.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1. 우주전파 재난 2.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⑪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⑫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장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를 “외교부”로 하

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⑬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우주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총 계	24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24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1
고위공무원단	8
3급 또는 4급 이하	230
전문경력관	1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우주항공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총계	52
일반직 계	52
3급 또는 4급 이하	52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5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우주항공정책국	1명
2. 우주항공정책국 3개 과	25명
3. 우주항공산업국	1명
4. 우주항공산업국 3개 과	23명
5. 우주항공임무본부	1명
6. 우주항공임무본부 4개 부문장등	4명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